

지급명령신청서(구상금)

채권자 (-)
주소
연락 가능한 전화번호

채무자 (-)
주소
연락 가능한 전화번호

청 구 취 지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

1. 금 원
2. 위 제1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%의 비율로 계산한 돈

※ 독촉절차비용 : 금 원(내역: 송달료 원, 인지액 원, 서기로 원)

청 구 원 인

1. 청구 내역 요약 (기준일: 20 . . .)

순번	대위변제금	대위변제일	이율	이자 등	합계	비고
1						
2						
합계						

2.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

순번	대출기관	대출과목	약정일	약정금	잔여 원금	이자 등	합계	연대보증인 (근보증액)
1								
2								
합계								

3. 청구원인 사실

(기존에 서술 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)

4. 기타 <예시>

- 가.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가합 호 대여금 등 사건, 20 . . . 승소확정판결
- 나. 서울가정법원 20 느단 호 상속한정승인 사건, 20 . . . 인용

※ 이 사건 관련 변제 등에 관한 문의 안내: 고객지원센터(-)

첨 부 서 류

1.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<별지 예시>

2.

20 . . .

채권자

(서명 또는 날인)

◇ 유의 사항 ◇

1.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의 10분의 1의 액수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며, 당사자 1명당 6회분(예: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인 경우 12회분)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2.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이므로 개인상호를 상법상 회사와 같이 표시할 수 없고, 자연인의 경우처럼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이때 성명 또는 주소 다음에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(예: ○○통상 대표자)하는 것은 무방합니다.
3.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 채무자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.
4. 시효연장을 위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및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‘4. 기타’ 란에 해당사건의 법원명,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